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제3차 모집 공고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3차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9. 8.

창 원 시 장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지원인원: 5명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 한 창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중년 근로자 1인당 250만원
 - 지원방식: 선정된 기업 중에서
 - ①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② 5개월간 임금 지급 후 ③ 고용유지 상태에서 고용장려금 신청 시 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한도

구분	피보험자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신청일 기준)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II 참여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여 자격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기업2.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3. 2025년 1월 1일 이후 5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급여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40시간 이상 근무- 고용 후 5개월 이상 근무(임금지급)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2.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제외 대상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기업2.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3.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4.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4대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5. 공적 자금 투입 기관 및 기금 출연기관6. 일부 제한 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7. 2024년도 참여기업 중,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증가 시에만 신청 가능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4.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5. 비상근 촉탁 근로자6.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Ⅲ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9. 8.(월) ~ 10. 31.(금) ※ **선착순 접수**
- 접수처 : 문서24 온라인 접수(<https://docu.gdoc.go.kr/index.do>)
 - ※ 접수기관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 ※ 접수제목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신청서(기업명)
- 문의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중장년일자리팀 ☎ 055-225-3343
-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 할 수 있음**

제출서류		비고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4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기간 : 2024.01.01.~ 2024.12.31.)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증빙서류(입금확인증 혹은 이체증명서)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신규채용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Ⅳ 기타 사항

-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신중년을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신청 가능
- 동일시기 접수시 우선순위 부여: ① 제조업 ② 5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이미 선정된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 기업을 선정